

PUBLIC

DHL Global E-Commerce Webinar Series - 5

DHL과 함께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

DHL KOREA 통관팀 최철호 팀장

Oct. 2021

DHL Express. Excellence. Simply Delivered.



AGENDA

1. 수출 통관의 이해와 절차
2.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의 종류
3. 수출 통관 거래 구분 및 주의사항
4. FTA의 이해와 종류
5. 전세계 전자상거래 수출입통관 동향



1. 수출 통관의 이해와 절차

수출이란?

-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대외 무역 법)
-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관세법)



수출 통관의 목적

불법 물품 차단



통계 자료 집계



수출 통관의 흐름



2.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의 종류

수출 신고의 종류와 혜택

- 수출 신고는 목록 통관과 정식 통관으로 나뉘며, 2020년 10월 수출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간이 통관"을 "목록 통관"으로 명칭 변경됨
- 수출 신고의 혜택 : 반품 재수입 면세,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 세울 간편신고



간이 수출 통관

-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신고 시스템 즉 전용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만 간이수출신고가 가능
- 연계 방식 ① XML전자문서 전송/ ② 블록체인 노드 공유
- 사전 신고인 부호 발급 및 시스템 연계 필요
- 주의 : 전자상거래 수출간이통관의 신고항목수는 경감되었으나 주문번호, 결제방법, 조정금액등이 입력되어야 함

수출 신고의 종류

유형	목록 통관	간이 통관*	정식 통관(일반 통관)
신고구분	목록통관절차	정식통관절차	정식통관절차
신고인	특송사/우체국	관세사 및 수출자(전자상거래업체)	
금액 기준	FOB 200만원 미만		금액 제한 없음
추가 기준	수입시 재수출조건부나 세관장확인대상등 반드시 정식통관을 해야하는 것을 제외한 경우	전자상거래물 품	FOB 200만원 이상 또는 정식 신고 대상인 건은 필수
신고항목수	17개	27개항목	57개항목
적재이행의무	X	0	0
수출신고필증	X	0	0
실적 인정	Δ	0	0
관세환급	X	0	0
부가세영세율	Δ	0	0
재수입면세	0	0	0
시스템	특송사(중계시스템)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세사 신고 시스템 또는 UNIPASS (KTNET의 goGlobal 등)

3. 수출 통관 거래 구분 및 주의사항

수출의 거래 구분

부호	거래구분	부호	세부사항
11	일반형태 수출	83	외국에서 수리, 검사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15	전자상거래:*	84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수리, 검사(가공 제외)등을 행한 후 재수출(국산일 경우 89)
17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	85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체육대회, 전시회, 박람회, 문화예술공연 등에 참가 후 재반입
22	기타 일반업체가 수탁 받아 가공 후 수출	86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 체육대회, 전시회, 박람회, 문화예술공연 등에 참가 후 재수출.
29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	90	기 수출된 물품에 대한 수리, 하자보증품 발송 시.
31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92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72	외국물품을 수입통관후 원상태로 수출	93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78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 다시 반송되는 물품(단, 중계무역수출제외)	94	기타 수출승인 면제물품

- 일반 수출 통관 구비서류 또는 확인 사항
 - ✓ 사업자 번호, HS 코드(HSK), 환급 여부,
 - ✓ 환급 시 : 환급자 (제조사, 수출자) 구분, 필요시 사업자 번호

주의사항

- **전자상거래 거래 구분:** 반드시 전자상거래 건은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15로 신고되어야 함
- 최근 관세청에서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관리강화
 - 풀필먼트란:** 물류 전문업체가 판매자 대신 주문에 맞춰 제품을 선택하고 포장한 뒤 배송까지 마치는 방식. 즉, 주문한 상품이 물류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배달 완료되기까지의 전 과정* 을 일괄 처리하는 것 예) FBA 아마존 풀필먼트
 - * (상품의 입고, 보관, 제품 선별, 포장, 배송, 교환·환불 서비스 등)
- **전략물자:**
 - ✓ 세번, 국가, 제품 명, 해외거래처, 수출자 등 랜덤 선별되며 필요에 따라 현품 검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 ✓ 전략물자 관리원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에서 전략물자 허가 대상인지 홈페이지에서 자가판정서, 전문판정서를 통해 발급
 - ✓ <https://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
 - ✓ 신고취하도 자가판정서를 제출 해야하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4. FTA의 이해와 종류

FTA란,

- 국가간 상품과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상호간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 한국은 FTA의 적극적 확대를 추진중에 있으며 아래 7건 11개국 확대 협상중
 - ✓ AP: 한중일 FTA,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 ✓ EU: 러시아
 - ✓ Central and South America :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에콰도르

FTA 특혜세율 적용

- 전자상거래 물량의 증가와 DDP건의 발송이 증가함에 따라
- 도착지 국가의 수입 통관에 있어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발송시 원산지 증명 기준을 주의 해서 작성 필요**
 - ✓ 영미권 국가는 자율 증명 방식
 - ✓ 그 외 아시아 등은 기관 발급 방식

FTA 체결 현황: 59개국 17개 협정

FTA	국가	원산지
EFTA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자율증명
ASEAN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미얀마,인도네시아,필리핀,브루나이,라오스,캄보디아,태국	기관증명
EU	오스트리아,벨기에, 체코,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 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 네덜란드,폴란드,포르투갈,스페인,스웨덴,불가리아,루마니아,키프로스,에스토니아,몰타,라트비아,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자율증명
중미	파나마, 니카라과, 온두라스,코스타리카	자율증명

- AP : 중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 US : 미국, 캐나다,
- Central and South America: 콜롬비아, 페루, 칠레
- EU : 영국, 터키
- OCEANIA: 호주,뉴질랜드



5. 전자상거래 수출입통관 정책 동향

저가 신고 (Undervaluation)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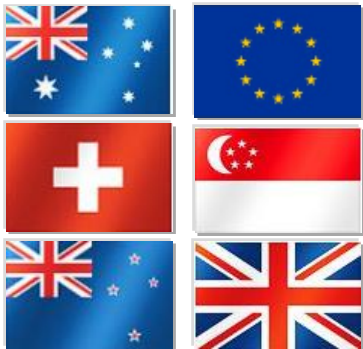
- 전자상거래 물량의 증가는 각 국의 세수확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 아래의 과세 진행 이외 undervaluation 에 대한 적극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
- 고의적 저가 신고는 주요 Compliance 저촉 사항임
- 특히 UK등 EU국가에 있어 엄격히 적용하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및 위해물품관리강화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국제적으로 지적권 및 위해 물품 등의 적발이 대폭 증가했습니다(5년새 2배증가)
- 특히 지적재산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주요 적발 사항 중 하나입니다
- 한국 세관의 경우 협업 센터의 확대를 통한 불법 또는 위해 물품의 차단을 강화하고 있음

수입 과세형: 수입 B2C에 대한 VAT 또는 GST부과



- 해당국으로 판매하는 B2C 업체는 사전 해당국 관세당국에 등록하여 사전 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 발송시 수입자 TAX ID에 해당 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 B2C업체는 판매 시 해당국가의 GST세율을 확인하여 포함 판매하고, 연간 매출 금액 기준(AUD75000/년) 이상 시 세금 납부함

수입 통제형: 수입 횟수 제한 및 수입자 실명제 (합산과세 등)



- Frequent control : B2C 수입횟수제한 6회/6개월
- Real importer management : 실명제 (사전등록, 성명, 전화번호)
- Real name verification: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실명제
- Real importer management : 개인수령물품 TAX ID 의무화

5. 전자상거래 수출입통관 법규 동향

수입 전자상거래 : 구매대행업체 관리 강화

- 목적: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 보고 및 통관 질서 확립
- 등록대상:
 - ✓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중 '통신판매업자' 로 신고한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자
 - ✓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시행 단 시행일 당시 등록 대상업체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등록 유예
- 협조사항:
 - ✓ 미등록 시 2천만원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 ✓ 통관 목록 서식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 항목 추가됨에 따라 등록 대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반드시 사전 특송사/관세사에 구매대행업체 부호를 통보하여야 함

수출 통관

- 수출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 ✓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취하 간소화: 소액·다품종 물품을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 반품이 잦아 수출신고 취하가 빈번히 발생 제35조의2에 따른 200만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 간이수출신고 취하시 증빙서류 제출 생략
 - ✓ 자율정정 확대: 수출신고 후 발생하는 정정신청 건수가 과다하여 수출업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본연의 업무인 수출신고 심사(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확대함
-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 시행 안내
 -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기적 의무에 대해 연장신청시 즉시 승인 및 사전 기한 도래 안내를 통한 과태료 경감
 -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검사: 이외 우수 업체와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 검사를 생략
 - 물류대란에 따른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확대

THANK YOU